시흥MTV 웨이브파크리움 분양광고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건축물의 입주자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임(허가번호 : 2019-건축과-신축허가-124(2019.6.30.)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흥시 건축과 2020-건축과-분양신고-11(2020.11.02)로 분양신고 필증 득함.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입장이 제한되거나 거부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하여 측정한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사용, 비접촉 체온 측정 등 코로나 감염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물

■ 사업주체 : 시행수탁 : (주)하나자산신탁 ■ 시행위탁사 겸 시공사 : (주)온누리종합건설 ■ 분양대행사: 대경디엔씨(주)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정왕동)
• 공급규모 : 지하 4층~지상 8층, 1개동, 오피스텔(476실) 및 부대시설(주차장, 기계/전기실)
• 대지면적 : 5,005.0000㎡ [오피스텔 대지지분 4,521.3936㎡]
• 연 면 적 : 오피스텔 32,210.0360㎡
• 주차대수 : 총 476대 (자주식 378대, 기계식 98대)

■ 건축물의 층별 용도

구분	B4~B1F	1F	2~8F	비 고
용도	주차장,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	판매시설 등 (홀, 부대시설 등)	오피스텔 등	-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 오피스텔 면적표

구 분	타입	공급실수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벽체/코어)	소계			
오피스텔	A	119	20.6798	11.4359	32.1157	23.5839	55.6996	7.7801
	B	329	25.5712	13.7597	39.3309	29.1622	68.4931	9.6203
	C	21	41.6980	21.7937	63.4917	47.5536	111.0454	15.6875
	D	7	38.3650	20.1132	58.4782	43.7525	102.2308	14.433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표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오피스텔 공급금액

구분	타입	공급실수	구분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회차 (10%)	2회차 (10%)	3회차 (10%)	4회차 (10%)	5회차 (10%)	6회차 (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2021.01.25	2021.04.25	2021.08.25	2021.12.25	2022.04.25	2022.07.25	입주시
오피	A	119	최고가	53,500,000	93,070,000	9,307,000	155,877,000	15,587,700	15,587,700	15,587,700	15,587,700	15,587,700	15,587,700	15,587,700	46,763,100
			최저가	48,820,000	84,930,000	8,493,000	142,243,000	14,224,300	14,224,300	14,224,300	14,224,300	14,224,300	14,224,300	14,224,300	42,672,900
	B	329	최고가	75,750,000	131,780,000	13,178,000	220,708,000	22,070,800	22,070,800	22,070,800	22,070,800	22,070,800	22,070,800	22,070,800	66,212,400
			최저가	60,390,000	105,050,000	10,505,000	175,945,000	17,594,500	17,594,500	17,594,500	17,594,500	17,594,500	17,594,500	17,594,500	52,783,500

스 텔	C	21	최고가	105,560,000	183,650,000	18,365,000	307,575,000	30,757,500	30,757,500	30,757,500	30,757,500	30,757,500	30,757,500	30,757,500	92,272,500
			최저가	96,340,000	167,600,000	16,760,000	280,700,000	28,070,000	28,070,000	28,070,000	28,070,000	28,070,000	28,070,000	28,070,000	84,210,000
	D	7	최고가	93,360,000	162,420,000	16,242,000	272,022,000	27,202,200	27,202,200	27,202,200	27,202,200	27,202,200	27,202,200	27,202,200	81,606,600
			최저가	86,040,000	149,680,000	14,968,000	250,688,000	25,068,800	25,068,800	25,068,800	25,068,800	25,068,800	25,068,800	25,068,800	75,206,400

-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실별 정확한 분양 대금(공급 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호실 별 계약 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별 최저, 최고금액으로서 호실별 금액은 오피스텔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동호수 배치도 및 동호별 공급금액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 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벽면적 등은 공용면적에 가산됩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지는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로 정리하였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5,005.00㎡) 내 공개공지면적(510.71㎡)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대상은 476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해야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2020년 2월 21일부로 시행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 청약 대상 호실은 분양광고일(2020.11.0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에 한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호실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접수방법 : 1인당 1실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 중복 청약신청을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감정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예비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수 발생 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5항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0.11.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 본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타입별 분양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0.11.02) 현재 시흥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 합니다.
 단,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시흥시 거주지역 당첨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서류(주민등록초본 등) 검토 후 시흥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호실
 오피스텔 : A타입 23실 / B타입 65실 / C타입 4실 / D타입 1실 총 93실 표기함.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청약일정 및 장소

▣ 오피스텔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구 분	일 시	장 소
청약 신청	거주자 우선공급 및 일반분양	2020.11.10.(화) 08: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
당첨자 발표	거주자 우선공급 및 일반분양	2020.11.13.(금) 16:00시 이후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 -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 한국감정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시 선착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거주자 우선공급 및 일반분양	2020.11.16.(월) 10:30~17:30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4-4)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PC[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 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하나은행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방법,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0원** **(금 일천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하나은행 전 지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하나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 사실확인 방식</td></tr>
<tr><td colspan="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하나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0.11.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청약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 의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감정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세대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 합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업주체에 없습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중도금 무이자 융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층·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 2020.11.13.(금) 16:00 이후
• 발표장소 :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0년 11월 13일(금) 16:00이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층.호실 결정방법	• 한국감정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층·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 기간 : 2020.11.16.(월) 10:30~17:30
- 계약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4-4 시흥MTV 웨이브파크리움 견본주택 1층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도 일괄 환불되므로, 계약 시 계약금 전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분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시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 시	1. 계약금 입금영수증(반드시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 2.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2통 (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법인 계약 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2부 (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 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오피스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하나은행	864-910007-78104	㈜하나자산신탁

- 예금주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시행수탁사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은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 수납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관계자(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층·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 표기 예시 : 7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701홍길동
- 납부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은행 영업일)로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층·호수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잔여 호실에 대하여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은 최초 모집공고 공급금액 이하로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하여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 규약을 준수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 금액
 - 분양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무이자 대출을 알선 예정이며 오피스텔 60%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예정입니다.(단, 정부 정책 및 대출 기관의 사정, 계약자의 금융기관 신용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본 사업의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중도금 대출제한 및 대출이자 상승, 대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및 할인은 적용 불가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2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별도 통지합니다.
 (사전방문 통지는 예정일 10일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본 사업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함)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전매 제한기간은 분양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단,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승인 후 1년까지)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 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모집 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배치 및 층, 향, 호수별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이후 분쟁사항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호실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할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정산 처리되며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 비율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기둥, 보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 (부대시설, 자전거 거치대, 드라이에어리어(DA), 재활용폐기물보관소,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및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호실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과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에 표현된 입면은 본공사 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 및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본 건축물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전이나 본공사 도중에는 실내 무단출입 및 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최초 분양광고 전 배포된 홍보물 또는 사업주체에서 배포하지 않은 홍보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분양 관련 사항]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 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취득신고 등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해야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당사자(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관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공고, 광고물 관련 사항]

-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조성계획(지하철역, 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은 각 시행주체(관계기관)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되는 오피스텔 타입은 A타입과 B타입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자전거 거치대, 포장, 주변환경, 제연휀룸 및 휀룸용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고저차,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와 출입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간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문, 도어 및 점검구 등은 본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부 관련사항]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지하1층~지하4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4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1층에 구성된 판매시설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를 근거로 총476대로 산정되며 지하층에 주차장(기계식 주차 포함)이 시공됩니다.
- 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과 외부시설물의 위치,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업무 또는 영업 등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개발로 인한 건축사항,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과 업무 및 분양시설의 배치,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배치 및 설계계획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사생활 침해, 외풍, 소음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공간(한전패드),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쓰레기 수거장,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오피스텔 내부에 혹은 외부에 선홈통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기준 내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본 건축물의 외부/내부 마감, 재질 및 색채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또는 해당 호실의 특화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들에 대해 현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설치된 시설들의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일부 특화를 위하여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계약자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조명에 의해 일부 내부에 빛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명의 위치나 빛의 세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최상부층의 경우 단지모형 및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옥상에는 점검을 위한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일부 특화를 위하여 내외부 및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세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방재실, 우편함, 자전거 거치대, 재활용폐기물보관소 등)은 현장여건 따라 입주시 카다로그, 모형 및 투시도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아파트 또는 건물의 시각적 간섭, 소음, 분진, 냄새 등으로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타입에서도 평면의 방향, 설비기구 배치, 내부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 및 보행자 통로는 입주민 외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없으며, 관리유지비가 발생시,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배정 관련 사항은 계약 전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유의사항]

- 본 건축물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8	S_4	1.2	D	1	4.0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Ⅷ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07(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호실 및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호실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 및 홍보관이나 카탈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별 현관문 및 방화문, 점검도어, 테라스,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천장내부에 상부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방재실, 우편함, 자전거 거치대, 재활용폐기물보관소 등)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는 소화수조, 펌프, 제연팬룸등의 소방시설 및 실외기등 설비장비가 설치될수 있으며 각각 상·하부층에 인접한 호실는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의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될 수 있고,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 및 냉방설비는 지역난방시스템 및 개별냉방기기(시스템에어컨)에 의해 공급됩니다. 공급설비의 용량제한으로 실내 냉난방 기기의 용량 증대, 교체 및 증설은 불가합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위치 및 문(출입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의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시설별 전기실, 방재실, 발전기실은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간 경계벽은 골조벽체로 시공되며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진출입구,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단지 내 옥외소화전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 등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동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층고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볼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차장 진출입구에 별도 구획표기를 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호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판매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펜스 설치 및 변경, 제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조경시설물 및 사업지내 보행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지역난방공급 방식이며, 장비운영을 위한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배기휀 등 공용기기의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의 부지 내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이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가스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오피스텔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의거 옥상층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공동현관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건축물의 관리단이 형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분양(공급)계약 시 제공받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본 건축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실내조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부에는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재활용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경관 침해 및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내·외부 조경, 시설물, 기계설비(급배기휀, 급배기구)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피트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지하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함을 사전에 인지 하셔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본 건물 부지 일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지역난방 의무사용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각 오피스텔별 개별냉방기기(시스템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오피스텔별 냉난방 사용요금은 각 오피스텔별 개별 계량기(냉방, 난방용)에 의하여 부과 됩니다.
- 지상 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인접호실에서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공 시 호실별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실내 일부 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이전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조경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및 기초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구조개선을 위해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자전거 거치대,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외부 에스컬레이터, 상가, 관리시설, 수경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호실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이 접해있어 방범에 취약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과 인접한 일부호실은 판매시설 상부에 설치되는 주방배기 설비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및 배기구에 따른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호실은 판매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상가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외부상세계획,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담장 설치여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공사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인접호실은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홍보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와 인접한 저층 및 일부 호실은 소음, 매연, 먼지 등의 환경오염,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출입구 형태에 따라 공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 구조형식 등이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출입구별로 상이하며.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진입 유효 높이는 2.3m 기준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하며, 지상은 비상차량(소방차, 구급차 등)외 진입 및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 각 호실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견본주택상의 단지 모형 등의 홍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일부 호실은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이라도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저층 석재색상,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나, 향후 인접건물 등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하부 PIT높이, 비내력벽의 구조 및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 난간이나 구조물의 마감,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와 오피스텔 일부 호실 내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일부 환기창이 설치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설치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호실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시설, 판매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설비 환기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창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주변에 노출되거나 호실과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과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에는 설비장비(휀 등)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설비장비 설치 하부 및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진동, 소음, 연무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각 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위실 및 마감재 관련사항]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증감될 수 있으며, 호실 내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 설치되는 현관, 창고, 창호 및 점검구 등의 도어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실제 시공시 브랜드, 재료,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변경 및 증감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호실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관 바닥, 욕실 타일 등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현관 디딤판에 시공줄눈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정)에는 타일,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내 환기설비가 천정 내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내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및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본공사 시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실 상부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기기는 견본주택용 기기로 본 공사시에는 냉방전용기기(천정형에어컨)로 설치되어지며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난방은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냉방은 개별냉방(시스템에어컨)으로 공급예정입니다.

[부대시설 관련사항]

- 단지 내 부대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 자료나 모형, 이미지 상의 부대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관리주체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호실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호실에서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 및 설치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가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며,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업무시설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출입구별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호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비용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형 토지신탁

- 본 공급 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온누리종합건설 (이하 "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주)온누리종합건설 (이하 "시공사"라 함), 대출 금융기관인 우선 수익자 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온누리종합건설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인 ㈜온누리종합건설과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온누리종합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온누리종합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인

㈜온누리종합건설에게 있습니다.

4. 분양계약 목적물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인인 ㈜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하나자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하나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온누리종합건설에게 있습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7.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 부동산 개발 등록 번호 : 서울 080007 • 사업 방식 : 분양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 형태 : 분양 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2019년 6월 30일 건축 허가 완료(2019-건축과-신축허가-124)

■ 사업 주체 및 관계 회사 안내

구 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110111-1714818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주)온누리종합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2906호(송도동, 송도센트로드)	110111-1357626
분양대행사	㈜대경디엔씨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80, A-222호(자곡동, 강남유탑유블레스)	110111-7111620

■ 견본주택 분양안내

- 모델하우스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4-4 시흥MTV 웨이브파크리움 견본주택
- 연락처 : 1566-8990
- 홈페이지 : www.waveparkrium.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 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